

# 韓國 保險產業과 保險開發院의 역할 및 발전방향

申 守 植

(高麗大學校 教授·經濟學博士)

## I. 保險產業 질적 성장의 문제점

1960년대 이후 최근 30여년동안 우리 保險產業은 고도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保險市場의 황무지 상태에서 엄청난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그 동안 保險業界는 특히 양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질적인 성장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가비판적인 소리가 높았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保險產業에 있어서 양적 성장이란 수입보험료의 규모, 자산 및 운용수익, 시장구조 및 상품 등 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외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질적인 성장은 保險業界의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保險技術의 향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保險商品의 개발 및 판매능력, 위험의 선별 및 인수, 보유, 분산, 保險料率의 산정능력, 보험자산의 투자,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능력 등이 광의의 保險技術에 포함된다. 保險業界의 입장에서 질적 성장을 더욱 확대 해석하면 保險會社의 종합적인 경영관리 능력, 환경 적응력, 신속 적

절한 의사결정, 미래지향적인 조직화 및 人材養成 등 모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질적성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비단 保險產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양적성장은 질적향상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한 초창기의 단계에서 벗어나 2000년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保險產業에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保險產業의 질적성장을 위해서 업계로서는 협회 및 개별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재의 양성·확보가 요망된다. 물론 保險產業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產學協同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大學 및 전문 연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제까지 학계의 지원이 부족했던 점도 질적성장을 저해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1964년 韓國保險學會가 產學協同體로서 발족하여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어느 경우이든 學會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업계의 질적성장을 代行할 수는 없으며, 특히 최근

일부 지방대학에서 保險學科가 설치되고 있지만 60년대 이후 정규대학에서 일부만 保險論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어서 인접분야인 금융, 자본시장과는 달리 保險學을 전공하려는 後進學者들이 드물었고 설사 있다고 하여도 이들의 학계 진출이 어렵고, 업계에서의 수용도 기대하기 곤란하여 保險學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 발전이 지연되어왔다.

한편, 60년대 이후 大學研究所, 國策研究所, 市中研究所, 產業體附設研究所의 발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그 흔한 保險研究所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保險研究所는 1961년 韓國保險研究所(소장:宋基澈교수)가 고려화재해상보험(주)의 도움으로 同社內에 발족하여 기관지「保險研究(현재 損協의 損害保險誌 전신)」를 발간하였으나 그 활동은 2년을 가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우리 保險產業 및 학계의 질적성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는 90년대를 맞이하여 保險開發院의 발족은 이 기관이 학계중심의 순수 保險研究所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유사기관이 없는 입장에서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 II. 保險開發院의 역할과 기능

保險開發院은 1989년 12월 1일 사단법인으로 새로 발족한 단체로서 1983년 말에 설립된 韓國損害保險料率算定會의 모든 업무 및 재산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그 설립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保險料率의 산출과 保險商品의 개발,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험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통하여 保險契約者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개발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① 保險料率의 산출 및 검증
- ② 經驗生命表의 작성과 補整
- ③ 산출한 保險料率의 인가신청
- ④ 保險料率과 保險에 관련된 정보·통계·자료의 집적·관리·분석·작성 및 제공
- ⑤ 保險商品의 개발, 保險料率·約款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작성
- ⑥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기초서류의 확인
- ⑦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⑧ 위험도 측정 및 계약인수조건의 연구
- ⑨ 정부기관, 보험사업자, 기타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⑩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保險開發院의 주된 기능은 保險料率의 산출과 검증업무이다. 이 기관에서 산출하는 보험종목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법령상의 의무보험, 기타 보험종목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保險料率과 보험에 관련된 정보, 통계, 자료의 집적·관리·분석·작성 및 사업자에 대한 제공기능이다.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Data Bank사업을 조속히 구축하여 보험에 관한 종합정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신속한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종합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保險開發院은 발족한지 역사가 짧고 또한

정관에서 韓國損害保險料率算定會의 모든 업무와 기능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능과 업무영역을 확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개발원으로서 체제개편 이후 經驗生命表의 작성과 補整을 통하여 生命保險의 요율산출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로 확장하고 있으며 과거 料算會時代와 비교하여 保險商品의 개발과 기초서류의 확인 및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이 추가적인 역점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자는 보험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保險商品의 개발과 보험법(제198조의 2)에 의거 재무부장관으로 부터의 위탁업무로서 生命保險商品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상의 각종 계산검증, 保險約款의 보장내용과 保險料 산출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보험료 산출기초와 보험료 산출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후자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서 保險專門人을 확보·양성하여 보험전반에 관한 조사와 연구, 각종 연구보고서 및 전문지의 발간,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당국에 정책개발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 Ⅲ. 保險開發院의 발전방향

위에서 언급한 保險開發院의 역할과 기능은 정관(제5조)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保險開發院은 그 발족의 역사가 짧고 또한 韓國損害保險料率算定會의 업무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中·長期發展方向의 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선 지난 12월 발족 당시 재무부장관의 致辭와 保險開發院長의 기념

사를 중심으로 그 발족 의의와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건을 적기로 한다.

재무부장관은 保險開發院의 설립 의의와 기능·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보험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保險市場의 對內外開放擴大 등 保險産業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保險監督院을 설립하였고, 업계에서도 뜻을 모아 종합정보센터 및 전문요율산출기관으로서 保險開發院을 발족시키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保險産業이 선진 보험기법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서비스기능을 제고 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保險料率을 산출하고 보험에 관한 정보·통계·자료를 집적,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保險開發院은 보험경영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① 保險開發院은 보험에 관한 요율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므로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타당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保險事業者와 保險契約者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함은 물론 保險 Data Bank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전산망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② 국내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용한 자료를 보험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의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품개발 및 조사연구기능을 통하여 계약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保險開發院이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관한 권위있는 전문기관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보험관계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

한편 保險開發院長은 기념사에서 소기의 목적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몇가지 과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① 保險開發院이 신뢰받고, 권위있는 전문보험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직무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토록하고 保險專攻 전문인력을 연구원으로 확보하여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② 업무수행에 있어서 公正·正確·創意·協調를 바탕으로 하는 근무자세를 갖도록 하겠다.

③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모든 보험정보와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며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Bank 역할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④ 적극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 또한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연구원제와 전문위원제를 활용하며 조사·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⑤ 소비자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가칭 保險開發協議會를 설치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

⑥ 保險契約者の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겠다. 保險商品 내용의 검토, 요율산출을 통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요율산출 내용을 공개할 것이며, 保險開發協議會를 통하여 계약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

保險開發院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몇가지 과제의 제기 및 그 해결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保險開發院의 법적 근거는 1988년 12월 31일 개정 保險業法 제198조의 2(保險料率算出團體)의 신설에 의한 것이다. 그 前身으로 볼 수 있는 1983년 12월에 설립된 韓國損害保險料率算定會가 保險業法上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또한 韓國保險公社內의 保險料率審議會와 기능의 중복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988년 말에 이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당시 기존의 算定會의 기능과 성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서 여기에 근거한 保險開發院의 설립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開發院은 算定會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98조의 2에서 保險料率算出團體라는 표현 대신에 保險開發院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1988년 保險業法에서 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그 당시 기존의 算定會가 料率카르텔團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公正去來法上的 시비대상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保險業法에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 美國 등 선진국의 立法例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公正去來法을 의식할 때에는 오히려 독립된 特別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지 못할 경우 保險業法에서 지금보다 구체적

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保險開發院의 설립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출발단계에서 부터 과거 카르텔團體인 算定會의 잔재가 정관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관 제13조(사원의 가입), 제14조(탈퇴 및 제명), 제16조(보험요율의 준수 의무), 총회(제38조~42조) 등이다.

保險料率의 산출, 조사·연구, 자문 등을 중요 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는 保險開發院의 존재는 카르텔料率이나 自由競争料率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관과 같이 보험사업자가 총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보다 더 큰 기능을 수행하며, 社員으로서 가입, 탈퇴, 제명, 보험요율 준수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保險料率算出團體 및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保險開發院의 독립성·중립성은 保險業法이나 정관 어느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독립성과 중립성은 인사, 예산, 운영 모두와 관련된다. 保險開發院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公正去來法 입장에서 볼 때 카르텔團體의 성격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保險開發院의 예산은 일정한 분담방법에 의하며 가맹회사(사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등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自由料率時代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일부는 회비에 의한 분담이 아닌 서비스요금으로서 징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요금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保險開發院의 업무 및 운영의 특수성·독립성과 관련하여 이 기관이 保險業法 제14조(보고와 검사), 제199조(보험관계단체 등)에 의거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保險監督院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保險開發院은 保險協會와 달리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업무의 대부분이 조사·연구 등의 특수과제이므로 보고업무와 일반적인 업무(재산상황, 경리 등) 이외에 전문적인 보험요율산출, 기초서류확인, 상품개발, 연구·조사업무까지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네째, 保險開發院이 과거 算定會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족이후 단기간이지만 박사급의 연구원의 영입과 기존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순수 保險과 관련하여 國策研究所, 大學研究所, 企業附設研究所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保險開發院은 단순한 요율산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한정된 박사급의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기존의 인력을 소수 정예화하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유관기관과의 협력문제가 발족 당시 재무부장관의 致辭와 保險開發院長의 기념사에서 강조된 바가 있었다. 현재 협력기관로서는 韓國保險學會, 韓國保險計理人會, 保險研修院 등이 있지만 각자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실제로 협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정된 전문인력이 대학, 업계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 규합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정관 제31조의 전문위원회제도를 제

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및 각 단체에서 여러가지 명칭의 위원회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保險開發院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학계 및 업계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정부 및 보험감독원의 인사도 참여해야 할 것이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운데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保險開發院은 소비자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연구기관, 기타 보험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保險開發協議會(가칭)를 설치하며 주제 발표 및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소비자단체에게 요율산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관 제7조(서류열람), 제8조(보험요율서의 비치), 제9조(보험요율의 공고), 제10조(이해관계인의 異議제기), 제11조(공청회) 등과 관계된다. 특히 이 가운데 제10조와 제11조의 경우는 성격상 요율산출단체에 관한 特別法 또는 保險業法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 상대는 保險開發院이 아닌 정부 및 감독기관이어야 하며 공청회 등의 개최도 이들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保險開發院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그 동안 집적된 자료의 발간, 조사·연구보고서, 언더라이팅 및 우리의 고유한 시장조사, 각종 세미나 등 주로 간행물의 발간, 구입 및 활용에 배정하여 부진한 우리나라 保險研究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직의 개편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保險開發院의 조직부서의 명칭 및 기능, 각 지위의 호칭 등은 과거 算定會와 보험사업자의 조직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조직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조직편제는 연구조사활동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재편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 Staff기능은 가칭 사무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위의 호칭에서 상무이사, 부장, 실장, 담당역, 과장 등을 사용하는 것도 연구기관에서는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존의 직제와 직위로서는 외부의 고급인력을 영입하는데 기존조직 및 구성원과 마찰이 예상되고 적정T/O의 설정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전문위원회, 보험개발협의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